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8

특 허 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79호, 2018. 4.17.공포, 2018.10.18.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안 제96조)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안 제102조)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은 ‘영어’로만 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의 측면에서 일몰규제로 그대로 유지하여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 보유인력 요건은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규제 대상으로서 삭제함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 (안 제24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8. 14. ~ 09.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없음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동일인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되어 적법한 1개 이외의 나머지 서류인 경우

제9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제1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 언어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02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 언어: 2016년 1월 1일

2. 제9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인력: 2016년 1월 1일

제102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 언어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